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3차)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공공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u>청약자 본인은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u> <u>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u>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금 10% 이외에 <mark>2024년 07월 15일(월)에 중도금 10%, 2024년 08월 29일(목)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mark>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자금여력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국민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2020.05.30.해제)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	
일정	2019.05.16.(목)	2024.06.14.(금)	2024.06.19.(수)	2024.06.24.(월)	2024.07.01.(월)	

공통 유의사항

Ι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u>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 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П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14.(금)이며(주택소유여부, 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085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5.16.(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900044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 금광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LH가 사업시행자인 민관합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6.19.(수)	2024.06.24.(월)	2024.06.25.(화)	2024.07.01.(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DL이앤씨 본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한기간
전매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의 당첨자발표일(2019.05.30.)로부터 1년 - 現 전매제한 해제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Ш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9층 39개동 총 5,320세대, 일반분양 2,329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계약해제분 1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8월(잔금 납부 후 즉시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4910085	01	084.9800A	84A	1	408	1803	
	합 계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세대,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형	약식 표기	동별	층별	해당 세대수	수 공급금액	(10%)	(10%)	(80%)
1 10						계약시	2024.07.15	2024.08.29(입주시)
084.9800A	84A	408동	18층	1	595,180,000	59,518,000	59,518,000	476,144,000

■ 발코니확장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호수	구분	공급금 액 (부가세 포함)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2024.08.29(입주시)
09409004	0004 044 400 5 4000 5	발코니 확장	12,000,000	1,200,000	10,800,000	
084.9800A 84A 408동 1803호 ——	무상옵션 – 화장대(좌식형), 주방하부장(88cm), 마루(SAND OAK)	-	-	-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해제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써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추가품목 외에는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IV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추가선택품목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408동 1803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4081803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٧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24.(월) ~ 2024.07.03(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6.24.(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VI

- 서류 제출 일시 : 2024.06.25.(화) 10:00~1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DL이앤씨]
- 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제출	유형 발급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12	Τ"ΙΛΙπ	필수	해당자	기준	시ㅠ세술네당 ㅊ 걸답 ㅠㅋ시청	
신분증 <u>본인</u> · 2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0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0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0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	나르케츠데샤 미 바그 이이니회
		필수	해당자	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혼인관계증명서	0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0		본인	·국내거주 확인[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0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0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원		0	세대원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 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포함)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0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 하며, 세대원이 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심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무주택 소명자료		0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0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0	본인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위임장		0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0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사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4.06.14.(금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업주체에서 청약 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 판정시 당첨자 지위가 상실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4.07.01.(월) 10:00~1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DL이앤씨]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
 공통서류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68/III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제3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대리인으로 간주)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제출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혹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유의사항

VΠ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전 블럭의 지하주차장 층고는 2.3M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나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_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 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DL이앤씨
- 분양문의 : 031-780-0774